

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구분	지정기준
조직	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(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이나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한다)일 것
인력	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 것.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.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유센터의 장 1명 - 원자력안전관련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- 원자력안전관련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- 원자력안전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원자력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-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·보유·연계·가공·분석 등 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-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
시설	- 자료실 및 사무실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것 -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것